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비공개 대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에
장해방어조치 등에 관한 사항 제외〉

-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82호)
-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50호)

202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비공개 대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에 장해방어조 치에 등에 관한 사항 제외	4

I. 제안경위

【이훈기 의원안】

가. 제 출 자 : 이훈기의원 등 13인

나. 제출일자 : 2024. 8. 13.

다. 회부연월일 : 2024. 8. 14.

【최민희 의원안】

가. 제 출 자 : 최민희의원 등 17인

나. 제출일자 : 2024. 9. 6.

다. 회부연월일 : 2024. 9.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훈기 의원안】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등의 장애방어조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는 모든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사유를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등 4개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사업자 등이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방사성물질 누출 등 사고 관련 정보공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최민희 의원안】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원자력안전소통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원자력안전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 정보이기 때문에, 원자력사업자의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

이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더라도,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원자력안전정보이거나, 2)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원자력안전정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보의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3호).

Ⅲ. 검토의견

1. 비공개 대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에 장해방 어조치 등에 관한 사항 제외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를 제외하고(이훈기 의원안 제6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원자력안전정보를 제외하려는 것임(최민희 의원안 제6조제1항제3호 단서, 가목·나목 신설).

현행	이훈기 의원안	최민희 의원안
제6조(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하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이 보유·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6조(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 ① ---- ----- ----- ----- ----- ----- ----- ----- -----	제6조(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 ① ---- ----- ----- ----- ----- ----- ----- ----- -----

현행	이훈기 의원안	최민희 의원안
해당하는 원자력안전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2. (생략)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단서 신설>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 ----- ----- ----- ----- -----. <u>다만,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른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제외한다.</u>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 ----- ----- ----- ----- -----. <u>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제외한다.</u> 가. <u>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원자력안전정보</u>

현행	이훈기 의원안	최민희 의원안
4. (생략) ②·③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원자력 안전정보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6조에 따르면, 모든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사유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¹⁾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등 4개로 제한하고 있음.

< 관련 규정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6조(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하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이 보유·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

1)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2.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4.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에 관한 원자력안전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정보(이하 생략)

개정안은 방사성물질 누출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자의 (위법·부당)활동으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원자력사업자 등이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관련 정보공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소지가 있어 비공개를 최소화하여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자력사업자의 영업비밀 침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정보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며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입법취지로 판단됨.

현행법 제10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안전법」 제92조²⁾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등의 장해방어조

- 2) 「원자력안전법」 제92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진·화재와 그 밖의 재해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에 위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2.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한 때
 3.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때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사용정지, 방사성물질등의 이전·오염의 제거와 그 밖의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21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제3호, 제46조제3호 및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시행령 제7조에서 상황이 일어난 일시·장소와 그 원인, 방사선장해의 상황 등 공개 대상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관련 규정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10조(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해당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보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해 설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원자력안전협의회로서 해당 원자력이용시설과 관련된 협의회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은 그 조치가 완료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1. 「원자력안전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상황에 처한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원자력사업자(이하 “원자력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주소

2. 「원자력안전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상황이 일어난 일시·장소와 그 원인

3.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

4. 원자력사업자의 안전조치 계획과 그 내용

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치 결과

③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하여 보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원자력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사항은 그 조치가 완료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원자력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항을 각각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지체 없이 반영해야 한다.

또한, 현행법의 비공개 대상범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범위 대비 축소되어 있고, 특히,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현행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보다 범위가 축소되고 엄격히 판단토록 규정하고 있음³⁾.

다만, 방사성 물질의 누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재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원자력사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이미 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범위를 최소화하고 비공개 사유 해당 여부도 엄격히 판단토록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라는 판단 기준이 매우 추상적이며 모호하여 공개 대상 정보인지에 대하여 매번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임.

3) 비공개 대상 정보 비교

문 의 처
02)6788-5231

원자력안전소통법	정보공개법	비 고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소통법은 미규정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동일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동일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소통법은 미규정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소통법은 미규정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동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원천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통법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로 제한하여 규정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통법은 미규정

※ 대법원은 정보공개법의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법 보다 범위가 넓다고 해석(대법 선고2007두1798): 정보공개법의 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로 해석함이 상당함.